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0월 8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0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10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김명기)

가. 제안이유

-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재정비와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(안 제2조)
 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666명 → 677명 (증 11명)
 - 집행기관의 총수 : 654명 → 665명 (증 11명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(변동없음)
-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(안 별표 3)
 - 총 계 : 666명 → 677명 (증 11명)
 - 정 무 직 계 : 1명 (변동없음)
 - 일 반 직 계 : 642명 → 653명 (증 11명)
 - 4급·4~5급 : 4명 (변동없음)
 - 5급 : 27명 → 29명 (증 2명)

- 6급 이하 : 610명 → 619명 (증 9명)
- 전문경력관 : 1명 (변동없음)
- 연구 직 계 : 3명 (변동없음)
- 지 도 직 계 : 19명 (변동없음)
- 별 정 직 계 : 1명 (변동없음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재정비와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정원 666명에서 11명이 증가한 677명임. 집행기관의 총수는 654명에서 11명이 증가한 665명이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면, 일반직 총 11명 증가로 5급 2명, 6급 이하 9명이 증가하였음.
- 조례안 검토결과 2018년 승인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666명”을 “67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54명”을 “66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| 기관별 직급별 | 총 계 | 본 청 | 의회사무과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읍·면 |
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총 계 | 677 | 677 | | | | |
| 정무직 계 | 1 | 1 | | | | |
| 군 수 | 1 | 1 | | | | |
| 일반직 계 | 653 | 653 | | | | |
| 4급 | 1 | 1 | | | | |
| 4~5급 | 3 | 2 | | 1 | | |
| 5급 | 29 | 13 | 2 | 5 | 1 | 8 |
| 6급 이하 | 619 | 619 | | | | |
| 전문경력관 소계 | 1 | 1 | | | | |
| 연구직 계 | 3 | 3 | | | | |
| 연구관 | | | | | | |
| 연구사 | 3 | 3 | | | | |
| 지도직 계 | 19 | 19 | | | | |
| 지도관 | 1 | | | 1 | | |
| 지도사 | 18 | 18 | | | | |
| 별정직 계 | 1 | 1 | | | | |
| 6급상당 | 1 | 1 | | | |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 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666명</u> 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54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 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677명</u>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665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|